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방위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안규백 (국방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대규모 방산 수출 및 국가 간 협력사업에 있어 대응구매를 연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 대응구매는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조건부 거래로, 수입국과의 약정 이행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됨.

그러나, 현행 법령상 대응구매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만 있을 뿐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됨. 이에 대응구매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추진 위원회의 심의·조정을 거친 후 합동참모의장이 신속하게 소요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산수출과 연계된 전략적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방위사업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, “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”를 “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”로 수정하고,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⑨ 합동참모의장은 「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응구매를 추진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요결정을 추진할 수 있다.

부 칙

<제00000호, 2026. 0. 00.>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2조(소요결정 절차 등) ① ~⑧ (생략) <신설> 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요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.	제22조(소요결정 절차 등) ① ~⑧ (현행과 같음) ⑨ <u>합동참모의장은 「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응구매를 추진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요결정을 추진할 수 있다.</u>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요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전력정책과	
연 락 처	(02) 748 - 5613